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49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이종배 · 김미애 · 안철수
진종오 · 이종욱 · 배준영
김위상 · 이만희 · 김용태
최은석 · 김승수 · 윤영석
권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군·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57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2 중 “20”을 “3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